

## 실험실습실안전관리규정

제정 2004. 5. 1  
 개정 2009. 4. 13  
 개정 2012. 7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실험·실습실(이하 '실습실'이라 한다)에서 사용자가 실험·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'실습실'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, 연구원, 학생이 실험, 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.
2. '사용자'라 함은 본교의 교수, 연구원, 학생으로서 실습실에서 연구, 실험, 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안전관리책임자)** ① 실습실별 안전관리의 책임자는 해당 스쿨의 원장으로 하며 스쿨내의 실습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습실과 그 사용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관리부책임자는 담당교직원으로 한다.

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안전관리부책임자의 직무)** ① 안전관리부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실습실의 시설물, 기기,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, 유지관리, 폐기에 관한 사항
2. 실습실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
3. 실습실 운영과 체크리스트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4. 실험·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

②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실습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안전교육 및 지도)** ① 안전관리부책임자 실험·실습 전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실험·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)** ① 사용자는 안전관리를 수반하는 실험·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부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실험·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부책

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실험·실습 기기의 조작, 운영, 사용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시설·장비의 안전유지)** ① 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위험한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, 보관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위험물의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, 위험성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.

④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·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,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실험 시 발생한 실험세척수는 폐수배출라인을 통해 폐수저장탱크로 배출하고, 실험원액 및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은 실습실별 특성에 따르며,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실습실내에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실습실 안전수칙)** ① 실습실에서는 금연, 정숙, 청결,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한다.

② 실습실에는 실험·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.

③ 실습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다.

④ 실습실에서는 난방용으로 무단 전열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.

⑤ 실험·실습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

⑥ 사용자는 실험·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적절한 안전관련 장비를 착용하고 실험·실습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⑦ 사용자는 실험·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,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부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.

⑧ 실험·실습에 필요한 기기, 시약, 위험물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은 사용 전·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⑨ 실습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, 인화성물질 격리,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, 정리정돈, 잠금장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.

⑩ 실습실습실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실습실 특성에 맞게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자체점검)** ①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실습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습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실습실별로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검사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점검결과 실습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실의 사용을 제한하고,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야간 및 휴일 실습실 사용)** ① 사용자는 실험·실습을 평일 오후 6시 이후의 야간 시간 혹은 휴일(토, 일요일 및 공휴일) 에도 계속하여야 할 경우 해당 일에 사용할 실습실명, 사용자 인원 및 연락처, 책임학생 연락처 등 제반 사항을 명기한 “야간(휴일) 실습실 사용신청서”를 일별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야간 실습실 사용자는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부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안전사고 예방조치)** ① 사용자는 실습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안전관리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화재·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습실에는 경보장치,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⑤ 실습실의 건축, 전기, 기계,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고가의 실험기기가 설치되었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실습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점검)**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습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점검 하여야 한다.

1. 안전관리부책임자 선·해임 사항
2. 순시, 점검, 자체검사
3.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
4.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
5. 실험일지 및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

**제13조(실습실별 안전수칙 등)**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부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, 게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. 05.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9. 04.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. 07.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